(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참조2)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연번	안 건 명	소관부서	소관 위원회
1	○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무 과	자치행정 위 원 회
2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과	〃
3	○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4	○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5	○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
6	○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7	○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업지원과	경제환경 위 원 회
8	○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정 과	〃
9	○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10	○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녹 지 과	〃
11	○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
12	○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구청 (총무과)	〃
13	○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
14	○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위 원 회
15	○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	〃
16	○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족여성과	〃
17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과	〃
18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
19	○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	〃
20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위 원 회
21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통기획과	〃
22	○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의하여 “성남시관인조례”를 “성남시 공인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전용 공인(복합인증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성남시관인조례”를 “성남시 공인 조례”로 함 (안 제명) 나. 공인은 그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음(안 제2조제5항) 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직인 소지 조항 신설 (안 신설 제2조 제6항 내지 제7항) 라.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공인 등록 및 재등록 폐기에 관한 절차, 보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신설 제3조의3) 마.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사용(안 제4조제2항)	총 무 과	자치행정 위 원 회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5.11)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구미도서관 개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공포 및 신교통(경전철) 사업추진, 대부업 관리 업무 과부하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책기획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 운용을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소(局・所) 조정 내역〔증감 없음〕 ・ 명칭변경 : 지식문화센터 ← 중앙문화정보센터 ○ 과(課) 조정 내역〔6과 증설〕 ○ 신설(6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건축과, 구미도서관, 문화교통과(구청 3) ○ 명칭변경 : 2과 ▪ 지식문화센터 중앙도서관 ←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 ▪ 지식문화센터 분당도서관 ←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 기능분리 조정 : 2과 ← 1과 ▪ 주택과・건축과 ← 주택과 ○ 팀단위 조정내역 〔11팀 증설- 농업기술센터 포함〕 ▪ 신 설 : 18팀 - 농・축정팀 (지역경제과) - 기초노령연금팀 (노인장애인복지과) - 건강가정팀 (가족여성과) - 경전철추진팀 (교통기획과) - 생활기술팀 (농업기술센터) → 직급 및 인력 조정 없음 - 오・폐수관리팀 (하수관리과) - 도서관지원팀(중앙문화정보센터 중앙도서관) - 수서정리팀(중앙문화정보센터 구미도서관) - 정보봉사팀 (중앙문화정보센터 구미도서관) - 기초노령연금팀(3)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관광팀(3) (구청 문화교통과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체육청소년팀(3) (구청 문화교통과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폐 지 : 7팀 - 농정팀 (지역경제과) - 축정팀 (지역경제과) - 공중문화팀 (청소행정과) - 시설행정팀 (시설공사과) - 구청 문화체육팀(3)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명칭변경 : 5팀 - 청소시설과 재활용정책팀 ← 청소시설과 관리팀 - 청소시설과 청소시설팀 ← 청소시설과 재활용시설팀 - 구청 건설과 안전관리팀(3) ← 구청 건설과 방재팀(3) ▪ 소속변경 : 20팀 - 아동복지팀(사회복지과) ← 가족여성과 - 위스타트팀(사회복지과) ← 가족여성과 - 노인복지팀(노인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팀(노인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팀 (노인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과 - 건축1팀(건축과) ← 주택과(건축지도) - 건축2팀(건축과) ← 주택과(건축안전) - 광고물관리팀(건축과) ← 주택과 - 산업경제팀(3) (구청 신설 문화교통과)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교통행정팀(3) (구청 신설 문화교통과) ←구청(수정・중원건설과, 분당 도시미관과) - 주차관리팀(3) (구청 신설 문화교통과) ← 구청(수정・중원 건설과, 분당 도시미관과) - 민방위팀(3) (구청 건설과) ← 구청 총무과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5.11)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구미도서관 개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공포 및 신교통(경전철) 사업추진, 대부업 관리, 업무 과부하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 운용을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 정원 : 2,474명 → 2,513명(증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439명 → 2,478명(증39명) - 의회사무국의 정원 : 35명 → 35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조) • 일반직 정원조정 : 1,952명 → 1,990명(증38명) - 5급 : 125명 → 131명(증6명) - 6급 : 421명 → 431명(증10명) - 7급 : 627명 → 644명(증17명) - 8급 : 513명 → 522명(증9명) - 9급 : 248명 → 244명(감4명) • 기능직 정원조정 : 502명 → 503명(증1명) - 10급 : 201명 → 202명(증1명)	정책기획과	자치행정 위 원 회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5.11)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구미도서관 개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공포 및 신교통(경전철) 사업추진, 대부업 관리, 업무 과부하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 운용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기구 신설 및 소관 사무 변경 등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신설부서(6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건축과, 구미도서관, 문화교통과(구청 3) ○ 단위사무 부서조정 •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등에 관한 권한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 가족여성과 → 사회복지과 • 정화조·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신고대상 축산폐수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업무 : 청소행정과 → 하수관리과 • 건축허가, 위반건축물,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 : 주택과 → 건축과 ○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임용권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등 신축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과밀·과소 통·반 조정 ○ 아파트 명칭변경과 지번 합병 등으로 지번 정정 및 관할 구역 조정	자치행정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 수정구 신흥1동·신흥2동·신흥3동·태평2동·태평4동·수진2동·단대동·시흥동 중원구 금광2동·상대원1동·하대원동,분당구 수내1동·정자1동·금곡1동·구미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별표) • 신흥 1동 : 23통 120반 ⇒ 23통119반(△1개반감소) • 신흥 2동 : 38통 203반 ⇒ 38통 205반(2개반증가) • 신흥 3동 : 16통 79반 ⇒ 16통79반(증가없음) • 태평 2동 : 23통 136반 ⇒ 23통135반(△1개반 감소) • 태평 4동 : 19통 114반 ⇒ 19통114반(증가없음) • 수진 2동 : 23통 140반 ⇒ 23통 140반(증가없음) • 단 대 동 : 21통 113반 ⇒ 21통 117반(4개반 증가) • 시 흥 동 : 9통 25반 ⇒ 9통 27반(2개반 증가) • 금광 2동 : 31통 194반 ⇒ 31통 195반(1개반 증가) • 상대원1동 : 35통 204반 ⇒ 35통 204반(증가없음) • 하대원동 : 25통 154반 ⇒ 25통 151반(△3개반 감소) • 수내 1동 : 27통 166반 ⇒ 32통 193반(5개통 27개반 증가) • 정자 1동 : 59통 364반 ⇒ 60통 374반(1개통 10개반 증가) • 금곡 1동 : 59통 388반 ⇒ 59통 388반(증가없음) • 구 미 동 : 52통 322반 ⇒ 52통 309반(△13개반 감소) ※ 시전체 1,148통 6,931반 ⇒ 1,154통 6,959반으로 6통 28반 증가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표기 오류를 정정	자치행정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table>
<tr><th>연번</th><th>안 건 명</th><th>부 의 안 건 요 약</th><th>소관부서</th><th>소 관
위원회</th></tr>
<tr><td></td><td></td><td>□ 주요골자
○ 중원구 상대원1동· 상대원2동·상대원3동의 관할구역 정정
<table><tr><th colspan="2">행정운영동의 명 칭</th><th>동장 정수</th><th>동사무소 의소재지</th><th>관 할 구 역</th></tr><tr><td rowspan="3">중원구</td><td>상대원 1동</td><td>1</td><td>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td><td>상대원동중 1~154, 161~211, 221~259 279-1, 303~561, 567-1, 885~1772, 1900~1978, 5436, 5437, 5438, 5439, 산1-98, 산102~273</td></tr><tr><td>상대원 2동</td><td>1</td><td>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td><td>상대원동중 664~665, 2989~5435, 5440~5449-1, 산99~101</td></tr><tr><td>상대원 3동</td><td>1</td><td>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td><td>상대원동중 155~160, 212~220, 260~278, 280~302, 562~566, 568~663, 666~884, 1773~1899, 1979~2988</td></tr></table></td><td></td><td></td></tr>
<tr><td>7</td><td>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td><td>□ 제안이유
○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건립취지인 전통민속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속공예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예전시관의 설치 목적에 관련 법률조항을 명기함(안 제1조)
나. 공예전시관의 설치 위치를 도시계획선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및 새주소 도입·시행에 따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다. 공예전시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td><td>기업지원과</td><td>경제환경
위 원 회</td></tr>
</table>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라. 중복 나열된 업무명을 통합하고 시대의 변화와 우리시에 맞는 공예산업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마. 우수한 민간의 운영 기법 도입을 위하여 위탁 시 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6조, 제8조) 바. 사용료등의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8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고지정에 필요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4조) ○ 금고 지정에 필요한 지정절차 방법(안 제12조)	세 정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9	성남시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2007. 4.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개정 모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2007. 4. 11. 개정되어 관련 조문이 확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그 확정 조문을 삽입하고, ○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정부방침으로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급등함에 따라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행정자치부에 감면조례 승인을 신청하여 시달된 재산세 감면조례 표준안(지방세제팀-1874, 2007.07.31.)으로 시세감면조례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감면조례 제6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조문 삽입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합산(0.2～0.5%)으로 급등하면서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75%→50%→25%)하여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주고자 함(안 제16조의2)	세 정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0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호와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 ○ 현재 사기막골 유원지는 성남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라 시설 폐지되었으며, 남한 산성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유원지임에 따라 본 조례 적용이 불가함. □ 주요골자 ○ “ 동 조례 폐지 ”	녹 지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1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9일 개정되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가 제정 추진 됨에 따라 현 성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와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 주요골자 ○ “ 동 조례 폐지 ”	녹 지 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2	신흥3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신흥3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2008년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신흥3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신삼길113 ○ 주차면수 : 91면(지하1층 48면, 지하2층 43면) ○ 시설장치 · 주차관제시스템 · 무인감시카메라 6대 (지하1층 3대, 지하2층 3대)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법인·단체·개인 등) 다. 위탁관리의 필요성 ○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청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대화 예방	수정구청 (총무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3	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2008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구청 (총무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가.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중앙길 5번지 ○ 주차면수 : 83면(지하1층 40면, 지하2층 43면) ○ 시설장치 · 주차관제시스템 · 무인감시카메라 6대 (지하1층 3대, 지하2층 3대)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법인・단체・개인 등) 다. 위탁관리의 필요성 ○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청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대화 예방		
14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6. 25 전쟁등에 참여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공헌한 숭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을 위하여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및 지급대상자 규정(안 제3조, 제4조) ○ 수장지급결정 및 지급 규정(안 제6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5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자활·자립 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위함 □ 주요골자 가. 적용의 범위 : 성남시에서 설치한(시에서 출자한 기관포함)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매점의 규모는 15㎡ 이하(안 제3조) 나. 신청자격 :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정함(안 제5조) 다. 우선계약의 대상 및 순위를 정함(안 제6조) 라. 계약자의 의무사항 및 사용료 징수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설치 계약의 중도해지 조건을 붙여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안 제9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가.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이용료 징수 등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여성가족부)에 따라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 □ 주요골자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 나. 보육정보센터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이용 조항 신설 ○ 센터 대강당 이용 등 시설 이용료 징수 및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배상 다.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간소화 ○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후 시장의 승인 →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시장에게 제출 라. 시립보육시설 지도감독 회수 변경 ○ 연2회 → 연1회 이상 마. 별표1 신설 ○ 보육정보센터 대강당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금액	가족여성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7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문화재단 사업 및 예산 결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함으로서 사업과 예산을 계획적이고 책임성과 투명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함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14조) ○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5조)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위 원 회
18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 하였기에 이를 총괄하는 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서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관리를 꾀하고 더불어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재단의 이사장을 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단 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도 청소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안 제3조) ○ 청소년관련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위촉하여 더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재단을 육성 하고자 함(안 제6조) ○ 재단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에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조정하고자 함(안 제12조)	체육청소년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9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에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음 . □ 주요골자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제1조 : 목적 · 제4조 : 사업 - 활동진흥, 보호 및 복지,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관리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제15조 · 제6조 : 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제7조 : 재산의 관리 · 제9조 :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세입으로 처리 · 제1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6조～제26조 · 임 원 - 임원수 :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감사2인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 사 : 선임직 - 청소년 관련분야 인사 중 이사회가 추천 당연직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시의회 의원 2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 임기 : 2년 (연임가능)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위원회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직 원 -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함. ○ 제4장 이사회 : 제27조～제32조 · 제29조 :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제5장 위원회 : 제33조～제38조 · 위원회 : 정책자문, 운영위원회(위원: 10명 이내) · 인사위원회 : 7인 이내로 구성 ○ 제6장 사무기구 : 제39조～제40조 · 사무국과 청소년시설로 구성된 사무기구 · 재단의 정원은 75명 · 예산변동을 수반하는 직제, 조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 제7장 보칙 : 제41조～제45조 · 정관변경,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공고 등 ○ 부 칙 : 제1조～제7조 · 고용승계 : 고용승계대상자는 재단설립 당시의 해당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한 한다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으나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준공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기존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로 제한 규정하고 있어, ○ 준 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 재건축 하는 경우에도 400퍼센트〕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준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400퍼센트로 함(안 제67조 제1항 제13호)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위 원 회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월정기권 주차 요금이 8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 공영주차장의 1급지 월정기권 주차 요금을 60000원로 개정하여 주차장 유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1급지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60000원으로 개정함(안 제 4조제1항 별표 1)	교통기획과	〃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22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 제안이유 ○ 2005.12.1 지하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하고 공공복리증진 및 시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8조) · 위원회의 자문범위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3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제25조) ·「지하수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재난안전 관 리 과	도시건설 위 원 회